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14일, 안상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상훈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개정하는 것이 법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위기가구의 범위는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비록 사회보장급여가 수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동의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표창 및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임.

다만,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적극행정과는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